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98
----------	-----

2016. 6. 23.(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6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6월 14일

-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상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직제조정과 감염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역학
조사관 배치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 3급△1, 5급+2, 7급△1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단위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과단위 상시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3급 1명을 감축하고 7급 1명을 5급 1명으로 변경하며, 여성정책관의 6급 인력 1명을 감축하여, 보건정책과에 역학조사관(5급 1명, 6급 1명)을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8호
의결 연월일	2016년 월 일 (제348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6년 5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8
----------	-----

제출연월일 : 2016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직제조정과 감염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 3급△1, 5급+2, 7급△1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295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4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8	43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3	-				
전문경력관 소계	1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55	-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소방직 계	1,614	-				
소방정	15	4		11		
소방령이하	1,599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295	-						총 계	3,295	-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4	-						일반직 계	1,444	-					
1~2급	1					1	1~2급	1					1		
2~3급	2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급	9	7		1		1		
3~4급	2	2					3~4급	2	2						
4급	68	43	7	5	7	6	4급	68	43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2	-						5급이하 소계	1,343	-					
전문경력관 소계	19	-						전문경력관 소계	19	-					
별정직 계	12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55	-						연구직 계	155	-					
연구관	28	1		26	1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27	-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지도사	20	-					
소방직 계	1,614	-						소방직 계	1,614	-					
소방정	15	4		11			소방정	15	4		11				
소방령이하	1,599	-						소방령이하	1,599	-					
교육공무원 계	43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조교	12	-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